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송정빈 의원 외 42명
- 나. 의안번호: 제2562호
- 다. 발의일자: 2021. 8. 10
- 라. 회부일자: 2021. 8. 18

2. 제 안 사 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로 되어 있는 조례의 용어를 한글화하고,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 역시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함.
- 어문 규정에 맞게 길고 간결한 문장은 정비하고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역시 바꾸어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함
- 나. “면제”를 “감면”으로 통일함 (안 제14조제2항 ~ 제4항)
- 다. “유어행위”에 대해 한자를 병기함 (안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18조제1항)
- 라.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함 (안 제18조제3항)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 등을 바꿈과 동시에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주요 용어를 통일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접근도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 전체 문맥에 맞게 주요 용어를 통일¹⁾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17조제1항제15호, 제18조 중 유어행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유어행위의 한자(游魚行爲)를 병기하고자하나, 상위법령인 「수산어법」 제2조제19호에서 유어행위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한자를 물고기어(魚)가 아닌 고기잡을 어(漁)로 병기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에서도 같은 한자를 병기하고 있음.

유어행위에 대한 한자어가 ‘물고기 어(魚)’와 ‘고기 잡을 어(漁)’가 혼용되고 있고 그 의미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현행 법령구조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국어대사전이 아닌

1) 면제, 감면 → 감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 또한, 안 제2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를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나 한강시민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 검토, 심의·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나 연구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개인과 단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